

등록번호	건설정책과-5005
등록일자	2019. 10. 28
결재일자	2019. 10. 28
공개구분	비공개(5)

사무관대우	행정사무관	건설정책과장	건설정책국장
			전결 2019. 10. 28.
협조자			

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규칙 폐지	주요 검토사항	
	정 책 중 요 도	보통
	민원 · 갈등 가능성	낮음
	기관간 이견가능성	낮음
	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낮음
	서민생활 관련성	낮음

◇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 행정규칙인 「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」 및 「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」를 폐지하고자 함

건 설 정 책 국
건 설 정 책 과

포괄대금지급보증적용기준 외 1건의 행정규칙 정비 추진

□ 폐지배경

① 「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」
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(법률 제14015호, 2016. 2. 3)에 따라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**포괄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폐지**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로 대체
- 이에 따라, 포괄대금 지급보증 **적용기준 대상사업***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 **고시**를 **폐지**하고자 함

* 낙찰률을 일정 기준(65.553~67.198%)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

② 「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」
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국토교통부령 제447호, 2017. 9. 20)에 따라 **전문건설업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·공시**
- 이에 따라, **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**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**고시**를 **폐지**하고자 함

* '17년 이전에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종별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분야별로 평가

□ 향후 계획

- 사전 규제심사(10월)
- 행정예고(11월 초) 및 **폐지안 고시**(11월 말)

붙임 1

「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」

1.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

가. 토목(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) : 65.553%,

나. 건축(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) : 69.103%,

다. 기타공사(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5%) : 67.198%

2. 행정사항

가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나. 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는 분(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)부터 적용한다.

붙임 2

「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 대상 전문 건설업종 및 공사」

1. 전문건설업종 및 해당공사

- 가. 토공사업 : 발파공사
- 나.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 : 구조물해체공사
- 다. 보링·그라우팅공사업 : 착정공사
- 라. 강구조물공사업 : 인도전용, 강재육교설치공사
- 마. 철강재설치공사업 : 교량 강구조물제작공사
- 바. 기계설비공사업 : 자동제어공사

2. 신고 및 평가방법

- 가. 전문건설업종당 1개 전문분야로 한정됨(해마다 전문분야를 계속 확대하게 되므로 한번 선택한 전문분야는 변경 할 수 없음)
- 나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신고시 해당 전문분야를 기재한 별도의 건설공사기성신고서에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(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)사본과 그 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(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는 인정되지 아니함)
- 다. 전문분야 평가액은 전문분야로 신고한 공사실적의 최근 3년간 평균액으로 하되, 당해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70%를 초과할 수 없음
- 라. 전문분야평가액은 건설면허수첩의 시공능력란에 부기할 수 있음

3. 행정사항

가. 시행일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.

나. 재검토 기한
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